

예산총칙

제1조 :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779,773,769	23,393,213
1. 일반회계	764,230,080	22,926,902
2. 특별회계	15,543,689	466,311
의료급여기금	1,537,064	46,112
주차장	12,428,515	372,855
주거환경개선사업	395,763	11,873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408,899	12,267
지하수관리	773,448	23,203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,400,000천원이다.

제4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5,015,704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6조 :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 (구비부담금 포함),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세, 보통조정교부금, 특별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등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,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